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

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·복 지 위 원 회

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: 2021 - 32

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
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2. 제안이유

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해당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	면적(m²)
방화2종합사회복지관	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	지하1층,지상3층	1,092.62

- 위탁사무내용
 - 사례관리: 보호 및 사례개입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
 - 서비스제공: 가족기능강화, 재가서비스, 자활지원 등
 - 지역조직화: 지역조직화(주민역량강화)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
 - 시설물과 복지관 재산의 유지 관리
 - 기타 보건복지부의 '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운영
- 위탁기간: 5년
-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(유찰2회시 수의협약 가능)
- 소요예산: 연간 1,060,397천원(시비 100%)

나. 추진일정

○ 2021년 5월 : 공개모집 계획수립

○ 2021년 6월~7월: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완료

○ 2021년 8월 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

○ 2021년 8월~9월: 위원회 집합심사 및 수탁법인 결정

○ 2021년 9월 : 협약체결 및 인수인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부칙 제3조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의 만료가 도래함 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 복지시설로서, 현재 사회복지법인인 굿네이버스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, 2021년 10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임
-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 되고, 해당 위탁 사무에 대해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운영의 전문성과 사회복지관의 운영평가 결과,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,
 - ※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부칙제2조에 의거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 제외 대상

-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.
- 수탁체 선정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상대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참고 관계 법령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-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 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

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- 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-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제5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 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및「사회복지사 업법 시행규칙」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 다)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종합사회복지관 내 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,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.

- 1. 강서구의회 대표 2명
- 2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3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4. 공익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- 5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- 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・기구・장비・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
- 2.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, 공신력
- 3.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- 4.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
- 5.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

부칙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